



김해시복지재단 업무협약서

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(이하, 복지관)과 강일병원(이하, 병원)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발전 도모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인적·물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,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상대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지원·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.

- 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건강한 생활 및 의료적 혜택 제공을 위해 병원의 정보를 공유한다.
- ②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서로 협력한다.
- ③ 병원은 복지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진의 의료상담 및 건강검진, 전문의료강의 등의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돋는다.
- ④ 병원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진료비 및 건강검진 등과 관련하여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


김해시복지재단

제4조(협약 기간 및 해지)

-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,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 1년 연장한 것으로 본다.
- ② 협약한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업무협약 후,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, 부득이 업무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- ① 본 업무협약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- ② 업무협약이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,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8. 30.



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
관 장 정 순 미 (서명)



강일병원
병원장 최 원 석 (서명)